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70
----------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윤준병 · 임호선 · 임미애
문금주 · 송옥주 · 이원택
문대림 · 이정문 · 안도걸
안호영 · 김 윤 · 박희승
전용기 · 양문석 의원
(14인)

제안이유

위탁선거는 공공단체등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장·조합장 선거는 금품 제공 등 금권선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현행 법률은 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과 자수자 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소시효도 짧아 선거범죄 억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및 조사 협조에 대한 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비용 관

리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가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6부터 제30조의7까지 신설)

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 선거운동에서 후보자가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비용의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의8 신설)

라.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설정하며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등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함(안 제30조의9부터 제30조의 11까지 신설).

마.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59조).

바. 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 등을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경우 또는 선거비용을 부정으로 지출한 경우 형벌 신설(안 제66조)

- 사.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현행 제공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서 30배 이상 80배 이하로 상향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8조).
- 아. 단서조항에 위탁단체 관련 개별 법령에서 공소시효에 대해 달리 규정할 경우 그에 따를 것을 추가(안 제71조).
- 자.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 감면 제도를 확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원 보호 규정을 마련함(안 제74조).
- 차.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사람을 포함함(안 제76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3호 중 “제30조의4까지에”를 “제30조의5까지에”로, “한정한다”를 “한정하며, 제30조의5에 따른 방법은 농협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후보자의 방송연설) ① 후보자는 정책이나 공약,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②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의 횟수, 시간, 방송시설의 기준, 방영 내용, 정보통신망 등 중계 방식, 신청서류 작성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의6(선거사무소의 설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의7(선거사무관계자)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는 제30조의6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후 선거사무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 선거사무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 지체없이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정원·선임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의 수는 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8(선거비용의 등록과 공개)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

② 후보자(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내역을 회계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고 및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9(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10(선거비용의 제한액 등)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인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에 활동범위를 고려한 가산금액을 합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외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공고 등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11(선거비용의 보전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각 호의 득표율에 따라 그 보전비율을 달리한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비용을 보전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2.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미반환(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제59조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6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소 등을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후보자·선거사무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30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제3항 본문 중 “10배”를 “30배”로, “50배”를 “80배”로, “3천만원으로”를 “5천만원으로”로 한다.

제71조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위탁단체 관련 개별 법령에서 공소시효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중 “자수자에”를 “자수자 등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8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2조에 따른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관련된 재판에서 제3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등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5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 중 “사람에게”를 “사람이나 제74조제3항에 따른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포상금의”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로, “제2항제2호에”를 “지급규모 등과 제2항제2호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 설>

조의5에 따른 방법은 농협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제30조의5(후보자의 방송연설) ①

후보자는 정책이나 공약,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②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의 횟수, 시간, 방송시설의 기준, 방영 내용, 정보통신망 등 중계 방식, 신청서류 작성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6(선거사무소의 설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7(선거사무관계자)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는 제30조의6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후 선거사무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 선거사무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

<신 설>

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 지체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정원·선임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의 수는 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8(선거비용의 등록과 공개)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

<신 설>

<신 설>

② 후보자(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내역을 회계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고 및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9(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10(선거비용의 제한액 등)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인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에 활동범위를 고려한 가산금액을 합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외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공고 등에 있어 기타 필요

<신 설>

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11(선거비용의 보전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농업협동조
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
거비용을 각 호의 득표율에 따
라 그 보전비율을 달리한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중앙회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비용을 보전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
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
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2.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
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
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미반환(이 경우 후보자
는 선거비용을 자부담하여야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① ·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6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③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u>한다</u>)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 ----- -----<u>5년</u>----- -----<u>5천만원</u>----- -----.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30조의6 및 제30조의7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소 등을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④ <u>후보자·선거사무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30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6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이익을 제공받은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71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0배-----80배-----

-----5천만원
으로-----.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공소시효) -----

-----하
며, 위탁단체 관련 개별 법령에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서 공소시효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4조(자수자 등에 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68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2조에 따른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관련된 재판에서 제3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신 설>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의

의 조사 등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5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

-----사람이나 제74조제3항에 따른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에게-----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지급규모 등과 제2항제2

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u>호에</u>----- ----- ----- ----- -----.
---	--